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1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이래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으나,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게 소방위 계급에 간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1.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

개정안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 <u>소방간부후보생</u> ”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 -----. ----- ----- ----- <u>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u>소방간부후보생</u> 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 <u>경력경쟁채용시험등</u> ”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u> ----- ----- ----- ----- ----- ----- ----- ----- -----.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11조(시험실시기관) -----
----- 소방위공개
경쟁채용시험합격자-----
-----.

-----.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③·④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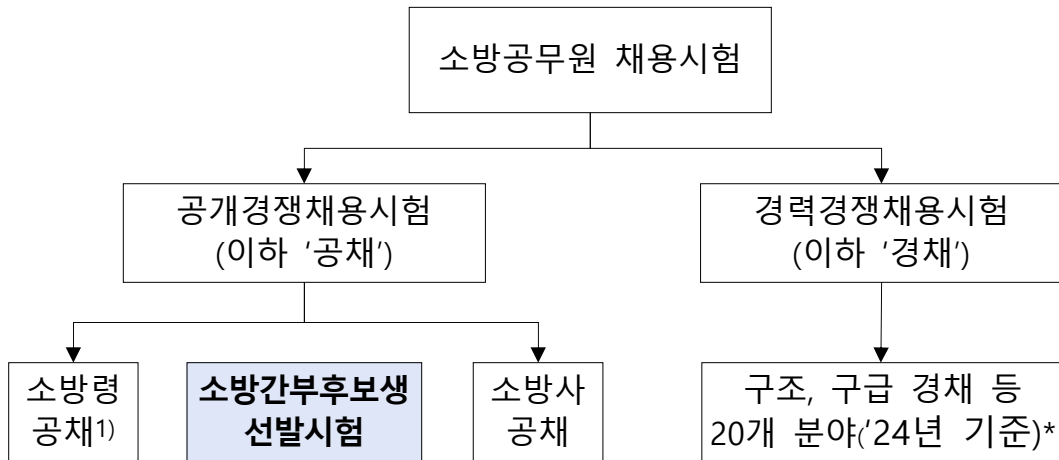
제31조(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

현재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음.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소방사, 소방위,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이 중 소방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제7조제1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유형>



* 건축, 구급, 구조, 소방(자격), 소방관련학과, 소방정(기관사), 소방정(항해사), 심리상담, 안전관리(화재조사), 자동차 운전,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화학, 변호사, 항공(조종), 항공(정비), 항공(운항관제) 등 경채 20개

<소방공무원 입직경로 별 현황>

(‘24.9월 말 기준, 단위: 명, %)

소방공무원 현원	공개 채용		경력 채용					
	소방간부	소방사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66,949 (100%)	676 (1%)	38,224 (57%)	5	32	104	136	220	27,552
			(42%)					

(자료: 소방청)

1) 소방령 공개채용시험은 법령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실시된 적이 없음.

그런데 이 중 ‘소방위’ 계급으로 선발되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만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제7조제1항 단서), 신규 채용시험 중에서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 대하여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제11조).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간부”라는 용어가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²⁾, 기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라고 구분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6823호)”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4. 2. 13일에 공포되었음³⁾.

개정안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로 보이고, 과거 인사혁신처의 ‘고시’ 명칭 개선 사례⁴⁾ 및 경찰청의 ‘경위 공

2) 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116823호) 검토보고서, 6면.

3) 법률 제20267호, 2024. 2.13. 공포, 2024. 8.14. 시행

4) 인사혁신처는 2011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라는 명칭을 ‘7급 또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였음.

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명칭 변경 사례를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와 개정안의 용어 비교>

현행	개정안
소방간부후보생 (제7조제1항 등)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11조)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선발시험

다만,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범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선발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으나(안 제11조),

현행법이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제7조제1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가 ‘소방위’ 직위임을 감안해서 소방위를 신규로 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은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특정직공무원⁵⁾인 경찰에서도 “경찰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용어 변경한 사례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용어 통일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12.11.>

참고 1

소방간부후보생 연혁

※ 자료: 소방청

□ 소방간부후보생 연혁

- 1977. 11. 26. 최초(제1기) 소방간부후보생, 중앙경찰교육원에서 임관
- 2024. 03. 15.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임용
- 현재까지 졸업 인원 : 1,078명(여성 65명)

<참고사항>

- 제5기 : 신설된 중앙소방학교(천안시)에서 교육 실시 (기존 : 중앙경찰교육원)
- 제12기 : 최초로 여성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 제17기 : 선발시험 기존 2년 ⇒ 매년 실시로 변경

기 수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임용일		77.11.26	80.11.04	83.02.22	85.02.18	87.04.07	90.02.13	93.02.10	95.02.21	97.02.27	99.03.11	01.03.08	03.03.05	05.03.09	07.03.13
임용 인원 (여성)*	1078 (65)	46	49	48	50	50	50	45	39	48	50	40	39 (3)	38 (4)	39 (3)
선발 인원 (경쟁 율)	1,091	50 (5:1)	50 (14:1)	50 (17:1)	50 (12:1)	50 (23:1)	50 (24:1)	47 (8:1)	40 (56:1)	50 (28:1)	50 (22:1)	40 (73:1)	39 (67:1)	38 (63:1)	40 (44:1)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20기	21기	22기	23기	24기	25기	26기	27기	28기	29기
09.03.11	11.03.03	12.02.29	13.03.29	14.03.31	15.03.27	16.03.25	17.03.24	18.03.23	19.03.22	20.03.20	21.03.19	22.03.16	23.02.27	24.03.15
37 (3)	39 (4)	20 (2)	20 (3)	30 (3)	30 (4)	30 (4)	30 (4)	30 (4)	30 (4)	30 (4)	30 (4)	30 (4)	31 (4)	30 (4)
37 (46:1)	39 (51:1)	20 (69:1)	20 (17:1)	30 (17:1)	30 (20:1)	30 (20:1)	30 (20:1)	30 (21:1)	30 (30:1)	30 (28:1)	30 (35:1)	30 (44:1)	31 (44:1)	30 (38:1)

※ (여성) : 임용인원 중 여성 인원

참고 2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구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채용계급	· 소방사, 소방위(간부후보생), 소방령	· 소방사 ~ 소방령
응시자격 요건	-	· 관련분야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응시연령	· 소방사(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위(21세 이상 40세 이하) 등	· 소방사(18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교·장(20세 이상 40세 이하) 등
채용분야	-	· 구조, 구급, 소방관련학과, 항공, 화학 등
시험절차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법무분야(변호사): 서류전형,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항공분야: 서류전형, 실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화학, 정보통신 등(소방장): 서류전형, 체력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 그 외 경채 시험은 공채 시험과 동일
필기시험 과목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구급(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 화학(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정보통신(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그 외(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구분	소방위(간부후보생)	소방사
시험절차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응시연령	· 소방위(21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18세 이상 40세 이하)
필기시험 과목	· 인문계열: (필수)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선택2) 행정학, 경제학, 소방학개론 등 · 자연계열: (필수)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선택2)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등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간부후보생 30명 중 인문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 채용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참고 3

2024년도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일정 및 교육과정 개요

※자료: 소방청

□ 2024년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일정

시험절차	일자	비고
공고일	'23. 11. 10.(금)	-선발예정인원: 30명 (인문계열 15, 자연계열 15)
필기시험	'24. 1. 13.(토)	
체력시험	2. 14.(수)	-최종합격인원: 30명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2. 21.(수) ~ 2. 22.(목)	
최종합격발표	3. 12.(화)	

□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 개요

- (교육기관) 중앙소방학교
- (교육기간) 1년(52주) / 합숙교육
 - 교육기간 : 2024. 3.25. ~2025. 3. 21. / 52주
 - 교육인원 : 30명 (남 26, 여 4) / 인문 15, 자연 15
- ※ 주요 교육일정

구 분	주요 교육
1학기	'24. 3월 입교 적응훈련
	4월 공직가치 / 구조훈련
	5월 화재훈련
	6월 행정실무(예방·보고서)
	7월 행정실무/ 합동교육
	8월 합동교육
2학기	9월 행정실무(소방·스피치)
	10월 구조심화/ 행정실무(법령)
	11월 화재·구급훈련
	12월 행정실무(재난·정책)
	'25. 1월 리더십·드론·ICT
	2월 관서실습
	3월 졸 업

- (교육내용) 직무역량교육(화재진압·구조·구급이론 및 훈련, 현장실습), 공직관 함양교육 등 이론·실습 교육
- (임 용)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임용